

안전·보건 관리규정

올릭스 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관련법”이라 한다)에 의거 올릭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소속된 종사자와 출입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을 따른다. 단, 기업부설연구소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는 「올릭스 기업부설연구소 안전관리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란 종사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해조건을 제거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사고”란 업무상 발생한 종사자에 대한 부상이나 건강장해 등 인적손실 또는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재해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안전보건방침)

경영책임자등은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경영목표 및 안전보건 성과개선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보건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사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수사항)

- ①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적절한 작업환경의 조성
 2.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이 규정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조치
- ② 종사자는 이 규정과 그 외의 사규, 관련법에 따라 사고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등이 하는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③ 경영책임자등은 이 규정 및 관련법에 따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도급계약 등에 반영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그 직무

제 6 조 (안전보건 관리조직)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조직은 올릭스 안전보건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라 하고 별표 1과 같다.

제 7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① 경영책임자등은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사항 및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CSO"라 한다)와 각 본부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본부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한다.
- ② 경영책임자등은 CSO에게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및 사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 (관리감독자)

경영책임자등은 회사 및 각 본부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CSO와 본부책임자 하에 관리감독자를 둔다. 관리감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조직의 안전보건 관리자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 9 조 (안전관리자)

- ① 경영책임자등은 회사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CSO 및 본부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 자격 및 세부 업무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제 10 조 (보건관리자)

- ① 경영책임자등은 회사의 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CSO 및 본부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보건관리자의 선임 방법, 자격 및 세부 업무 등에 관하여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제 11 조 (안전보건 운영회의 운영)

- ① 전담조직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운영회의 (이하 "운영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 ② 운영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 전담조직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 12 조 (안전보건교육계획)

- ① 경영책임자등은 운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연도의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경영책임자등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의결된 안전보건교육계획을 각 본부 구성원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따른 교육을 독려하며 관리한다.

제 13 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① 관리감독자는 제12조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이 수립한 안전보건교육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교육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외부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지체 없이 실시 결과를 그룹웨어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제3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게서 교육확인서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

제 4 장 작업장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제 14 조 (안전보건점검 등)

- ① 관리감독자는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해당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 대상·방법 등 안전보건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해당 부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그룹웨어에 등록해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안전수칙 등)

- ① 경영책임자들은 종사자가 각 업무를 수행할 때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업무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야 한다.
- ② 경영책임자들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안전수칙을 각 부서와 도급계약에 따라 작업장 등에 비치하여 종사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③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작업을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들이 정하는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 ④ 경영책임자들은 종사자가 건축·소방·가스·전기 등 시설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 16 조 (공동작업)

경영책임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2명 이상의 종사자가 함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작업에 대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종사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종사자 1명 이상 함께 수행해야 한다.

1. 사다리를 사용하여야 하는 고소작업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3. 화학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높은 작업
4. 고압 작업

제 17 조 (작업중지 등)

- ① 경영책임자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들을 그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경영책임자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고 작업을 중지한 종사자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작업중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들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8 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경영책임자들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회사의 시설·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경고, 지시, 안내, 금지, 그 밖에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제 19 조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

- ① 관리감독자는 회사 내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이하 "위험기기"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방안 및 방호조치를 관리한다. 또한 위험기기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기기를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③ 경영책임자들은 위험기기의 관리를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 ④ 경영책임자들은 위험기기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양도·대여·설치하거나 종사자가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20 조 (교통사고 예방 조치)

종사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1 조 (비상조치계획)

- ① 경영책임자들은 제33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대응을 위하여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에는 비상사태별 가상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대책과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자, 종사자, 인근 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영책임자들이 따로 정한다.

제 22 조 (피난 및 대응 훈련)

경영책임자들은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비상사태 가상 상황별로 주기적인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그 비상조치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가상 상황별로 비상조치계획으로 정한다.

제 23 조 (작업환경측정)

경영책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해당하는 회사 작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125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같은 동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제 24 조 (건강진단)

- ① 경영책임자들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일반건강진단
 - 2. 특수건강진단
 - 3. 배치 전 건강진단
 - 4. 채용 시 건강진단
- ② 경영책임자들은 효율적인 건강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매년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건강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종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들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④ 경영책임자들은 건강진단 결과 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⑤ 경영책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에 제1항 제3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경영책임자들이 따로 정한다.

제 25 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등)

- ① 경영책임자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부서의 종사자에게 건강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지휘하게 하고, 환기 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 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 26 조 (보호구의 지급 등)

- ① 경영책임자들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종사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작업시에 이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종사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경영책임자들은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보호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경영책임자들은 종사자가 보호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별로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 27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

- ① 경영책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1조에 따른 각 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하 "MSDS"라 한다)를 갖추어 두고 이를 종사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 ② 경영책임자들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 표시가 되어 있는 등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경영책임자들은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에 따라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한다.

제 28 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경영책임자들은 종사자에게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단순 반복 작업으로 허리, 목, 어깨 또는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 29 조 (건강장해 예방조치)

- ①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 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피로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경영책임자등은 업무 수행 중 종사자가 직무스트레스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경영책임자등은 폭염, 한랭, 미세먼지 등 기상이변이나 팬데믹 등으로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30 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 ①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②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성별·연령,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경영책임자등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발산하는 장소 또는 유해물질을 취급·보관하는 장소와 분리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 5 장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 31 조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등)

- ① 경영책임자등은 회사의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자 또는 종사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확대 방지와 사고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사고 발생 사실을 목격하거나 발견한 종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사고발생 현장은 회사 및 관련 기관의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 ④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질병·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하면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그 산업재해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경영책임자등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별표 3에 따라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사고조사반은 사고 조사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한다.
- ⑥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사고 조사 방법 등 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경영책임자등이 따로 정한다.

제 32 조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① 경영책임자등은 90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을 입힌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에 대한 조사 (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고조사는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신속하고 중립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사고 발생에 관련이 있는 부서의 본부장은 사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③ 경영책임자등은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전담조직에게 요청하고 전담조직은 개선 대책,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고 해당 본부의 장에게 방지 대책 시행을 통보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개선 요구를 받은 본부의 장은 즉시 개선 작업을 시행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전담조직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개선 조치 결과를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험성평가

제 33 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 ①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업무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의 정도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의 「위험성평가 실시 규칙」을 따른다.
- ③ 제2항의 「위험성평가 실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한다.

제 34 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등)

- ① 경영책임자등은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의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험성평가에 관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 35 조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위탁)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의 효과적인 유지·증진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보건 관리 전문가,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위탁을 의뢰할 수 있다.

제 36 조 (위반 시 조치)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이나 사규,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등 회사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저해한 자에 대해 징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징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 개인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3항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사규와 지시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직원을 소속부서에 통보하여 위반사항을 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37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

- ① CSO
 1. 사업장의 산재예방 계획 수립
 2.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6조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립 및 개정
 3.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② 본부책임자
 1. 본부의 산재 예방 계획 수립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3.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 관리
 5.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관리
 6. 위험성평가의 실시
 7.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 여부
- ③ 관리감독자
 1.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2.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및 그에 대한 교육·지도
 3. 산재보고 및 응급조치
 4. 안전,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5.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제 38 조 (매뉴얼 및 절차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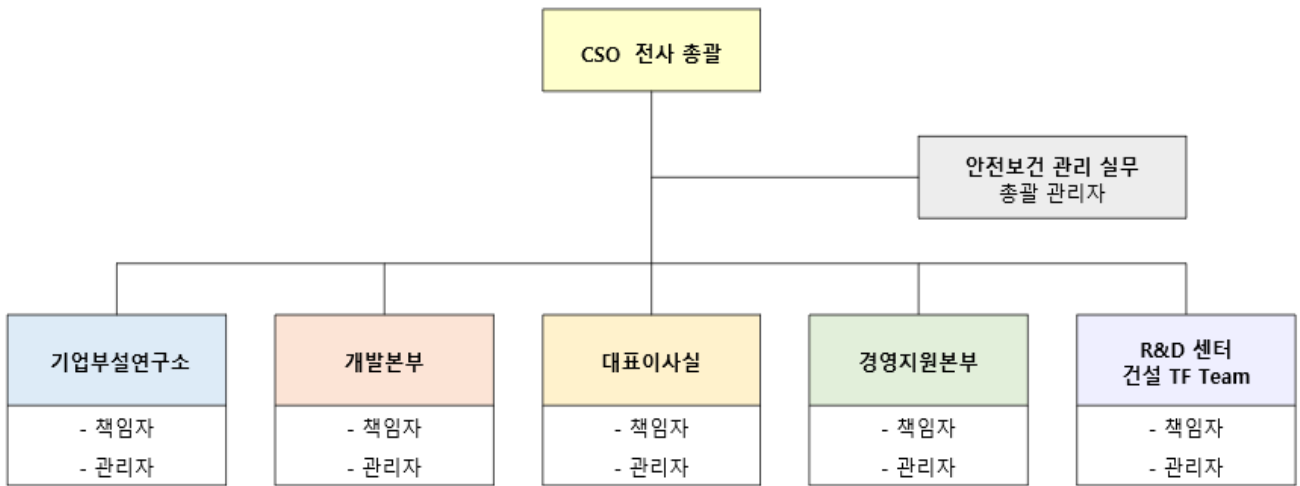
이 규정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하여 전담조직은 매뉴얼 및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CSO에게 승인을 받아 종사자에게 공지하고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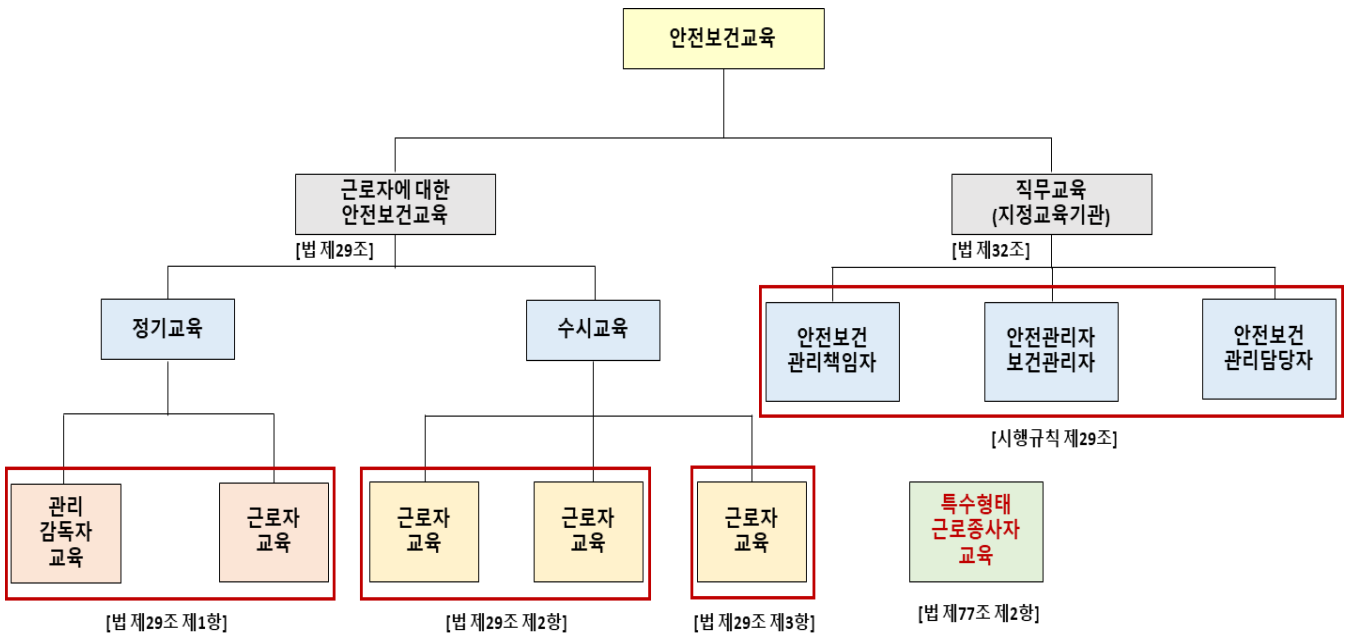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 전담조직 조직도



[별표 2] 안전보건 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 (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5 제1호 라목 제40호의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별표 3]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절차



사고조사 보고서			
사고명			
사고일시		사고장소	
인적피해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물적피해			
사고내용			
재발방지 대 책			

목격자 진 술				
사고조사반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인)		(인)
		(인)		(인)
		(인)		(인)
기타내용				